

제 호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

- 기관명: (법인등록번호:)
- 대표자:
- 소재지:
- 전화번호:
- 지정 연월일: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재·부품·
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